

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770
----------	------

2017년 4월 21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년 4월 7일 박마루 의원(찬성자 19명)
2. 회부일자 : 2017년 4월 11일
3. 상정일자 :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17년 4월 21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박마루 의원)

1. 제안이유

-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3661호, 2015. 12. 29. 공포, 2017. 12. 30. 시행)이 제정됨.

-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 및 지원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에 관한

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,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·시행 등 장애인 건강권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-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(안 제5조)
-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)
-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
- 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- 3)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1 제정안의 취지

- 본 조례안은 지난 2015.12.29.일에 제정된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장애인건강권법”이라 함)의 2017.12.30일 시행을 앞두고, 서울시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및 건강격차 해소,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보다 내실 있는 정책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시행령의 부재에 따른 조례 집행의 실효성 문제

- 2015년 「장애인건강권법」의 제정으로 장애인 건강증진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, 실제 법 시행은 올해 말(2016.12.30.)로 예정되어 있음.
 - 현재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및 국립재활원 등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상황으로, 아직까지 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구체적인 역할과 수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임.
- 따라서,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서울시장의 책무 및 서울시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다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, 동 조례안의 안정적인 시행과 조기정착을 고려할 때,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이후에

해당내용을 반영하여 하위 법률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성과 조례 집행의 실효성 차원에서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□ 담당부서에 재배정에 대한 검토 필요

- 현재 동 조례안의 담당부서는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로서 2017년 신규사업인 “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”이 현재 해당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담당부서 지정에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.
- 그러나 동 조례안의 근거법인 「장애인건강권법」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장애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애인정책과가 담당부서로 지정되어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 중임.
-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장애인 정책 전반에서 건강권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로 장애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한 축으로서 의료와 건강을 다루는 시민건강국에서 다룰 문제인지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할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□ 총칙 규정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4조)

-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각각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정의,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의무를 명시하여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,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시민의 의무를 명시한 안 제4조에서 그 주체를 ‘모든 시민’으로 정하고 있는데,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의 시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‘서울 특별시민’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

□ 시행계획(안 제5조)

- 안 제5조는 시장에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상위법에서는 따로 정함이 없는 바,
- 집행부에서는 해당 시행계획의 근거인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6조제1항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주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맞춰 서울시의 시행계획 역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.

□ 주요 사업(안 제6조)

- 안 제6조는 각 호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「장애인건강권법」에서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한 8가지 사업¹⁾과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사업을 규정하고, 이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.

□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(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9조)

- 안 제7조는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(이하 ‘지역센터’)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, 시장은 각 호에서 명시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곳을 지정하고 이를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
 - 안 제8조에서는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21조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, 같은 조 제2항은 동법 제24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.
- 안 제9조는 안 제7조에서 지정한 지역센터를 시장이 지도·감독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는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23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“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”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위법에 따로 위임된 사항은 따로 없음.
 - 집행부는 법률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, 시장은 법률에서 따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이 없어,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무부담 등으로 「지방자치법

1)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7조의 건강검진사업, 같은 법 제8조의 건강관리사업, 같은 법 제9조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, 같은 법 제13조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, 같은 법 제14조의 건강권 교육 사업,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의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, 같은 법 제16조의 건강 주치의 사업, 같은 법 제17조의 의료비 지원사업

제22조에 근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법률에 위임이 없다는 사유로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음.

- 그러나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20조제1항에서 시장의 지역센터 지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, 이 때 지역센터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, 시장이 지정한 지역센터의 자격 조건 유지 및 업무 수행 등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는 행정 권한도 함께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6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건강권”이란 질병 예방, 치료 및 재활, 영양개선, 재활운동,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,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.
2. “장애인 건강보건관리”란 장애 유무, 장애 유형 및 정도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 활동을 말한다.
3. “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”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, 주기별 질환관리, 진료 및 재활,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.

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, 장애 유형 및 정도, 모성보호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, 낮은 교육수준, 의료 차별, 적정하지 못한 고용·노동·주거 환경,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

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, 시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민의 의무) 모든 시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) ① 시장은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2.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3. 장애 유형 및 정도,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4.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)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
2.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
3.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
4.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
5.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
6.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,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
7.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
8.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
9.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서울특별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)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“의료기관”이라 한다)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·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서울특별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(이하 “장애인보건의료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,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
2.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
3.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4.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
5.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) ① 시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7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·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